

경운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에관한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/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지원하는 SW중심대학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이 사업단은 SW중심대학사업단(이하 “사업단”이라 한다) 이라 하며, 사업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“SW중심대학사업”이라 함은 4차 산업을 선도하는 SW융합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교육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/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.
- ② 정부지원금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/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.
- ③ 민간부담금이란 대학에서 본 사업을 위해 부담하는 교비(현금)을 말한다.
- ④ 기타지원금은 사업비 외 경상북도 및 구미시 등 지방자체단체의 지원금, 기업체 등의 민간부담금을 말한다.

제4조(사업목표) SW중심대학사업의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SW 혁신인재 양성(모빌리티 분야 특성화)
2. SW중심사회를 선도하는 SW엔지니어 육성

제5조(사업) 제4조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, 디지털정보원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한다.

1. 대학·기업 합동 SW교과과정 개발·운영 사업
 - 가. SW교육체계 개편
 - 나. SW교육과정혁신을 위한 SW분야 실행위원회 구성·운영
 - 다. SW전공자 특성화 교육
 - 라. SW융합 특성화 교육
2. 산학협력 프로젝트 및 인턴십 사업
 - 가. SW전공자 참여 산학프로젝트 운영
 - 나. 국내외 SW 장·단기 인턴십 운영
3. SW가치 확산 사업
 - 가. 비전공자 SW교육 프로그램 운영
 - 나. 지역사회 및 중·고교생 SW 교육·체험 프로그램 운영

다. SW분야 기업협업 지원

4. 사업단의 관리 및 운영

제2장 사업 책임자 및 사업단 구성

제6조(사업 책임자) ① 총장은 사업 총괄책임자인 단장을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 제2항에 따른 전임 교원 및 대학의 교무위원급 교원 중에서 임명한다.

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

1.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
2. 사업의 총괄 수행
3.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
4.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
5.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이 정하는 사항

③ 단장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 수행 기간 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.

④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대학의 사업 참여학과 소속 재학생, 연계전공자 및 융합트랙 입과 재학생, 그리고 해당 학과의 석·박사 과정생으로 한다.

제7조(사업단 설치) 총장은 SW중심대학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SW중심대학사업단(이하“사업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

제8조(사업단 구성) ① 사업단은 사업계획서상의 참여 학사 조직으로 구성한다.

②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부단장을 두며, 사업단에 SW혁신교육센터, SW전공교육담당, SW융합교육담당, SW가치확산담당, SW기초교육담당을 둔다.

③ 부단장은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센터장 및 각 세부 추진 사업담당자는 단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사업 종료 시까지로 한다.

④ 사업단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둘 수 있으며, 전담인력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및 대학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3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

제9조(위원회) 사업단에는 SW교육운영위원회, 자체평가위원회, 실무추진위원회 등을 둔다.

제10조(SW교육운영위원회) ① 단장은 SW중심대학사업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각 참여 학과와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에 기반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한다.

②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는 단장을 포함한 16명 이내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디지털정보원

장이 되며,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.

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사업 종료 시까지 연임할 수 있고, 운영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사업단 직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.

④ SW교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.

1. 사업단의 주요 정책 의결 및 성과관리
2. 사업단의 평가 및 자문
3.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규정 및 지침 제(개)정
4. 기타 사업단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⑤ SW교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, 경미한 사안이거나 위원회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(자체평가위원회) ① 사업단은 본 사업의 성과 평가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은 단장이 임명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연차평가,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 전에 당해연도 사업 성과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시행한다.

④ 단장은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사업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⑤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SW교육, 산학협력, SW가치확산 사업성과 관리 및 평가
2. 사업성과 개선방안 도출

제12조(실무추진위원회) ① 사업단은 본 사업 활동의 추진 및 관리의 총괄 등을 위하여 실무추진 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은 사업참여 학과 교수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고, 위원장은 단장이 맡는다.

③ 위원회는 사업의 추진과 활동을 위한 실무의 의결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
④ 단장은 실무추진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사업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⑤ 실무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SW교육, 산학협력, SW가치확산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성과 관리
2. 사업성과 개선방안 및 실행 계획 수립
3. 예산 집행 계획 수립 및 점검
4. 취·창업 촉진전략 수립

제13조(회의 및 의결) ① 제9조의 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회의 및 개최 시기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장 재정, 보고 및 회계

제14조(재정) 사업단의 재원은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 및 기타지원금으로 충당한다.

제15조(보고) ① 단장은 당해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, 사업단의 주요사업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단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/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사업실적과 사업비 산정·사용·관리·정산내역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6조(회계) 사업단의 회계는 산학협력단 회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. 다만, 정부기관의 사업지원금 및 외부기관의 지원금은 관련 법령이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7조(서류 및 장부비치) 사업단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장부를 비치하고 보관한다.

1. 사업단 및 산하기구의 규정 및 회의록
2. 기타 사업단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중요한 서류

제18조(국가재정지원사업 총괄 관리) 사업단은 경운대학교 대학혁신위원회를 통한 국가재정지원사업 총괄 관리 및 성과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래전략본부로 제출하고 대학혁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1.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·환류 계획 수립 및 운영현황에 관한 사항
2. 사업의 투명성·공공성 강화를 위한 회계 모니터링 및 예산 중복성 방지에 관한 사항

제19조(준용)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정보통신·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」과 산학협력단 회계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용한다.

제5장 보 칙

제20조(규정류의 제·개정) ① 단장은 SW중심대학사업 운영소위원회, 실무추진위원, 자체평가위원회 등의 검토와 SW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 관련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를 발의할 수 있다.

② 사업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SW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③ 규정류의 제·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 「규정류 운영 및 관리 규정」등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.

부 칙<2022.09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효력발생) 이 규정은 SW중심대학사업의 종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.
3. (경과조치)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